

#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0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4월 21일  
발의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'16.7.12.시행)에 따라, 체비지 변상금의 징수교부율을 조정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 변상금의 징수교부율을 50퍼센트로 조정함(안 제25조제2항)
- 나. 체비지의 매각대금·대부료·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경과조치를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4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인 2017년 3월 23일 (조례 제6435호) 전에 제8조, 제20조의2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